

완도군의회 공고 제2023 - 24호

##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3년 6월 8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발 의 자 : 최정욱 의원

3. 제정이유

-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상금, 출전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하여 우수 선수 및 체육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4. 주요내용

-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상금, 출전에 따른 격려금 지원(안 제20조)

#### 5. 관련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, 제8조, 제14조

#### 6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6. ~ 2023. 6. 14.

#### 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#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6, FAX: 061-550-5907)

#####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## 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(전화: 061-550-593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  
2.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--

「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##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) 군수는 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상금 및 출전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 앞에 “제4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”을 삭제한다.

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4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

제21조 앞에 “제5장 체육회 등 지원”을 삭제한다.

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5장 체육회 등 지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4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</u>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20조 (생 략)</u>  <u>제5장 체육회 등 지원</u>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21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20조(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) 군수는 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상금 및 출전에 따른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4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</u>  <u>제21조 (현행 제20조와 같음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5장 체육회 등 지원</u>  <u>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</u></p>